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나5716 판결 [점유회수]

재판경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나5716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4가단2789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원우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1. A

2. B

변론 종결2016. 7. 8.

판결 선고2016. 9. 23.

제1심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4가단27893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제1심 판결에 기한 가집행 과정에서 2016. 2. 24.경 피고 A에게 100만원을 주고 별지 목록 건물을 인도받은 사정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나, 피고들이 그 이후에도 제1심 판결의 당부를 다투면서 이 사건 항소를 유지하고 있는 점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면, 이는 제1심 판결에 기한 가집행으로 인도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인규

판사노현미

판사추성엽

별지